

고산동 도시계획도로(소로2-301호선) 개설공사 보상 계획 열람 공고

광주시 고시 제2023-133호로 고시된 「고산동 도시계획도로(소로2-301호선) 개설공사」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토지보상법”)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,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 3. 3.
광 주 시 장

1. 공익사업의 개요

- 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경기도 광주시 고산동 258-4번지 일원
- 나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
- 다. 사업의 명칭 : 고산동 도시계획도로(소로2-301호선) 개설공사
- 라. 사업 시행자
 - 성 명 : 오포농업협동조합
 - 주 소 :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889
- 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 - 착수예정일 : (변경)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
 - 준공예정일 : 2023. 12. 10.
- 바. 사업시행지의 규모

시설명	규 모			결 정		금회시공	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연장(m)	폭원(m)	연장(m)	
도 로	소로	2	301	8	119	8	35.4	

사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: 아 래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

(소재지 : 경기도 광주시 고산동)

일련번호	지번	지목	면적(m ²)		소유자		관계인		
			공부	편입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의 종류
1	258-4	전	213	213	오포농업협 동조합 (12/16)	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889			
					박재영 (2/16)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94번길 29,608동602호 (이매동,이매촌)			
					이경란 (1/16)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94번길 29,608동602호 (이매동,이매촌)			
					최옥희 (1/16)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11,605동1207 호 (이매동,아름마을)			
2	254-9	전	47	47	오포농업협 동조합	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889			
3	255-3	전	23	23	오포농업협 동조합	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889			

※ 해당 사업기간은 향후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

※ 본 공고문은 오포농협 홈페이지 [<http://www.opo.nonghyupi.com/xe/> → 공지 사항] 에서도 열람 가능

※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지정 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며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.

2.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

가.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: 2023.3.3.~2023.3.18.

※ 공고일로부터 15일, 초일 미산입

나.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

○ 오포농협 본점 총무과

-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889, ☎ 031)766-4008

○ 광주시청 도시민원과

-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, ☎ 031)760-4587

다.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

-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.
-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오폭농업 협동조합 총무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,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.

3. 보상의 시기

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보상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4. 보상방법 및 절차

구 분	주 요 내 용
감정평가	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”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상계획열람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증빙서류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습니다.
손실보상액 산정 및 통보	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”제6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보상협의를 및 계약 체결	보상협의를 토지소유자 및 권리자 개인별로 손실보상협의를요청서(협의 및 계약 관련 안내문 포함)의 서면 서류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하고,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합니다.
보상금지급 청구 및 지급 방법	보상금 지급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청구자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 처리하여 보상금 지급 의무를 종료 합니다. 단,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께서 권리를 해지 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하며, 대금 지급에는 행정 소요일이 필요합니다.
수용재결	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수용재결신청을 하며,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됩니다.

5. 기 타

- ① 상기 보상계획은 계획변경, 재조정,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보상의 시기, 계

획 일정, 보상의 내역 등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- ②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.
- ③ 물건조서의 경우 “공고대상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”를 포함합니다.
(보상대상 내역은 추후 확정측량, 계획변경, 재조정,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.)